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99

발의연월일: 2024. 7. 12.

발 의 자:이원택·박희승·문대림

김한규 • 이병진 • 임호선

송옥주 · 윤준병 · 주철현

문정복 · 서삼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, 이에 따른 농작물 침수 및 가축 폐사 등 농가·어가의 피해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,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농가·어가의 경영안정, 생산력향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은 농가·어가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.

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·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·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려 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함(안 제2조의2 신설).
- 나.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.
- 다.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·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함(안 제9조의2 신설).
- 라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(안 제9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"제5조제2항"을 "제5조제1항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4. "농어업재해보험"이란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을 말한다.
- 15. "보험목적물"이란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말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·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력 향상과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재해대책의 발전 방향 및 목표
 - 2.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
- 3.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
- 5.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재해대책을 통한 농가·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력 향상과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·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"을 "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및 시

행계획에 따라 다음"으로, "마련한다"를 "마련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복구에"를 "복구 및 생산비 보장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"어가에 대한"을 "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
- 6.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
- 7.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에 관한사항

제4조제1항 본문 중 "어가에 대한"을 "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실거 대가를 고려하여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대한의"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"제외하되,"를 "제외하되, 복구 및 지원 금액이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,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"비료대금"을 "비료대금, 인건비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농림축산식품부"를 "실거래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"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해서도 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5조(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) ① 농어업재해대책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.
 - 1.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
 - 3.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사항
 - 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 - ④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

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- 2.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- 3. 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·행정 안전부·환경부·국토교통부·농촌진흥청·산림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워
- 4. 농업협동조합중앙회·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
- 5.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6.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
- 7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는 농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 촉하는 사람
- 8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 촉하는 사람
- ⑤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2. 해양수산부의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
- 3. 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·행정 안전부·환경부·국토교통부·해양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공무원
- 4.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 사람
- 5. 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6. 어업인단체의 대표
- 7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는 어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 촉하는 사람
- 8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 촉하는 사람
- ⑥ 제4항제1호·제5호 및 제5항제1호·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한다.
- ⑦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을 검토·조정하고,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8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의2 중 "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"를 "심의위원회"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"받은 자"를 "받은 자(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주민을 포함한다)"로 한다.

제7조의2제1항 중 "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 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"를 "시·도지사가"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"입은 자"를 "입은 자(제1항에 따른 지원 요구를 받아지원한 자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통계의 수집·관리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·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통계자료를 수집·관리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를 요청할 수 있다.

- 1. 재해별 피해 원인 및 피해 발생 지역, 피해 규모에 관한 자료
- 2. 재해별 보상 규모 및 복구에 관한 자료
- 3. 농어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된 보험목적물 피해에 관한 자료
- 4. 친환경 농작물의 병충해 피해에 관한 자료
- 5. 상습침수구역에 관한 자료

- 6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
-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가·어가의 경영안 정 및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재해대책 제도 및 보조·지원 등을 위 한 조사·연구,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진흥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·관리, 조사·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9조의3(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"어업재해"란 이상조류(異常	3
潮流), 적조현상(赤潮現象),	
해파리의 대량발생, 태풍, 해	
일, 이상수온(異常水溫), 그	
밖에 <u>제5조제2항</u> 에 따른 어업	<u>제5조제1항</u>
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	
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	
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	
시설의 피해를 말한다.	
4. ~ 13. (생 략)	4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4. "농어업재해보험"이란 「농
	어업재해보험법」 제2조제2
	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을
	<u>말한다.</u>
<u><신 설></u>	15. "보험목적물"이란 「농어업
	재해보험법」 제5조에 따른
	보험목적물을 말한다.
<u><신 설></u>	제2조의2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
	의 수립ㆍ시행) ① 농림축산식
	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

농업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농가·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 산력 향상과 생산비 보장을 위 하여 제5조에 따른 농업재해대 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 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 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 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재해대책의 발전 방향 및 목 표
- 2.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한

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
- 5. 상습침수구역 대책 등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시설개선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재해대책을 통한 농 가・어가의 경영안정 및 생산 력 향상과 생산비 보장을 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

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 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 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는 기본계획에 따라 재해대책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 야 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통 계자료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 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 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・단 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정 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

제3조(재현	해대책)	국기	가와 기	이방자치
단체는	<u>다음</u>	각	호의	사항에
관하여	재해대	책을	을 마련]한다.

- 1. (생략)
- 2. 재해 발생 시의 농업용 시설, 농경지, 농작물 등의 <u>복구</u>에 관한 사항
- 3. (생략)
- 4. 재해를 입은 농가와 <u>어가에</u>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<u><신</u> 설>

<신 설>

5. (생략)

제4조(보조 및 지원) ① 국가와 저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

계획의 수립・시행에 필요한
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3조(재해대책)
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
<u>마련하여야 한다</u> .
1. (현행과 같음)
2
<u>복구</u>
<u>및 생산비 보장에</u>
3. (현행과 같음)
4 <u>어가의</u>
경영안정을 위한
5. 기후변화 대비 농업생산기반
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
6.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병충
해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
7.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을 받
지 못하는 보험목적물의 지원
에 관한 사항
<u>8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
제4조(보조 및 지원) ①
<u></u> ੀ

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, 「야생생물 보호 및관리에 관한 법률」, 그 밖의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, 피해의 경감, 재해의 복구 및 지원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, 이 법에 따른지원금보다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 및 「풍수해・지진재해보험법」에 따라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지원할 수 있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 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 음 각 호에 따른다.
- 1. 2. (생략)
- 3.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

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실거
래가를 고려하여 생산비 등을
포함한 최대한의
<u>제외하되, 복구 및</u>
지원 금액이 이 법에 따른 보
조 및 지원 금액보다 적을 경
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
<u>우에는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을</u> <u>하여야 하며,</u>
<u>하여야 하며,</u>
하여야 하며,
하여야 하며,
하여야 하며,
하여야 하며,

심는 경우: 종묘대금 및 <u>비료</u> 대금

4. ~ 10. (생략)

- ③ ~ ⑥ (생 략)
-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을 준용하되, 같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(이하 "공동부령"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⑧ (생 략)

제5조(심의위원회) ① 농업재해에 전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둔다.

② 어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

<u>用</u>
료대금, 인건비
4. ~ 10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⑦
<u>실거래가와 물가</u>
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
산식품부
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
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 및
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
재해 및 어업재해에 대해서도
보조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.
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
∥5조(농업 및 어업재해대책 심
의위원회) ① 농어업재해대책
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
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
부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워회

- 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를 둔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조 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의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를 해양수산부에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.
 - 1.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기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 항
 - 2. 제3조에 따른 재해대책에 관 한 사항
 - 3.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다른 법률에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또는 어업재해대 책 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 원회"라 한다)의 심의 사항으 로 정하고 있는 사항
 - 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 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 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,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 다.
 - ④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
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 재해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2.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- 3. 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 런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 부・행정안전부・환경부・국 토교통부・농촌진흥청・산림 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 무원에 속하는 공무원
- 4. 농업협동조합중앙회·산림조 합중앙회 소속 임원 중 중앙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
- 5. 농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
- 6. 농림축산업인단체의 대표
- 7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 천하는 농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8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 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⑤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각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 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.
- 1.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재해 대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2. 해양수산부의 재해대책을 담 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- 3. 자연재해 또는 재해대책 관

면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 부・행정안전부・환경부・국 토교통부・해양경찰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 하는 공무원

- 4.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속임원 중 중앙회장이 추천하는사람
- 5. 어업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6. 어업인단체의 대표
- 7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 천하는 어업재해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8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 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 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⑥ 제4항제1호·제5호 및 제5항제1호·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⑦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사항

제5조의2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제의제) 제5조제1항의 농업재해 대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조 제 2항의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 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제7조(응급조치) ①・② (생 략) 저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	을 검토·조정하고, 심의위원	회
	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	하
	여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	를
	<u>둘 수 있다.</u>	
	8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	분
	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	
	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	
	정한다.	
	<u> </u>	워
''	의제) 심의위원회	
	7조(응급조치) ①・② (현행	과
	같음)	
	③	
	<u>받은 자(제1항에 따라 응</u>	급
	조치에 종사한 주민을 포함	한
	다)	

④·⑤ (생 략)

제7조의2(죽은 동물의 처리 및 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) ①
「폐기물관리법」에도 불구하
고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이
나 수산동물(「수산생물질병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수산동물을 말한다)의 사체(死體)가 발생하여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(이하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8조(응급대책의 지원) ①·② (생 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7조의2(죽은 동물의 처리 및
사후 관리에 관한 특례) ①
<u>시</u> ·도지사가
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응급대책의 지원) ①・②
(현행과 같음)
③
<u>입은 자(제1항에 따른 지원</u>
요구를 받아 지원한 자를 포함
한다)

④ (생 략) <신 설>

- ④ (현행과 같음)
- 제9조의2(통계의 수집·관리 등)
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
 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
 ·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
 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
 의 통계자료를 수집·관리하여
 야 하며, 이를 위하여 관계 중
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
 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
 를 요청할 수 있다.
 - 1. 재해별 피해 원인 및 피해 발생 지역, 피해 규모에 관한 자료
 - 2. 재해별 보상 규모 및 복구에 관한 자료
 - 3. 농어업재해보험에서 제외된 보험목적물 피해에 관한 자료
 - 4. 친환경 농작물의 병충해 피

 해에 관한 자료
 - 5. 상습침수구역에 관한 자료
 - 6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자료
 -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
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가·어가의경영안정 및 생산비 보장을 위하여 재해대책 제도 및 보조·지원 등을 위한 조사·연구,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의 진흥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.
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수집·관리, 조사·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9조의3(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하여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 법을 알려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방법 등

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